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95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 : 김 윤 · 박지원 · 허 영

채현일 • 이해식 • 김남근

박민규 · 김문수 · 권향엽

박해철 • 전현희 • 이용선

문대림 · 김우영 · 송옥주

정진욱 • 최민희 • 정일영

이재관 • 문금주 • 이광희

전진숙 • 박정현 • 이재강

의원(2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3명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됨.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마 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 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1조의4 제2항제3호).
- 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 치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 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 다. 마약류관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이 법을 준수하여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의 대표자에 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 라. 마약류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마약

류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64조제1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제3호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마약류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5에서 같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다만, 총리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그 밖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마약류를 투약·처방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하는 경우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관리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이 법을 준수하여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마약류관리자의 변경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관리자 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마약류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마약류관리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42조의2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대표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
공 등) ① (생 략)	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	②
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	
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	
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마약류취급의료업자</u> 가 마약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	관리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	의 경우 그 마약류관리자를
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
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	<u>1조의5에서 같다)</u>
이하 같다)을 요청(전자적 방	
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	
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	
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생략)

③ (생략)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4명 이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마약류 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 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u>다만,</u>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u> 설>

<신 설>

② (생략)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생 략)

<신 설>

- 4.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 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 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의료기관-----

----.. <단 <u>서 삭제></u>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다 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그 밖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마약류 를 투약ㆍ처방하거나 투약하 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마약류관리자는 해당 의료 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신 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6. (생 략) <신 설>

17. ~ 20. (생략)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및 향정 신성의약품이 이 법을 준수하 여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 여 제공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2(마약류관리자의 변경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관리자<u>가 이 법 또는 이</u>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마약류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 고 인정하면 마약류관리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에 게 마약류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제42조의2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대 표자

17. ~ 20. (현행과 같음)